

국회의원(박정훈) 징계안

의안 번호	13616
----------	-------

요구연월일 : 2025. 10. 16.

요 구 자 : 문진석 · 김기표 · 김 현
노종면 · 문금주 · 박상혁
박용갑 · 박홍배 · 백승아
안태준 · 윤종균 · 이기현
이성윤 · 이주희 · 이훈기
전진숙 · 조인철 · 채현일
한민수 · 허 영 · 황정아
의원(21인)

주 문

국회의원(박정훈)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9호,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또한, 동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55조(징계)제9호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정훈은 2025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우영을 향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에이 한심한 새끼야. 야 새끼야 나가 너”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 바, 이는 해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을 향한 모욕적 언사이며 비윤리적 행위임.

다. 국회의원 박정훈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 국정감사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국회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라. 또한 국회의원 박정훈은 2025년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막말을 퍼부었음. 해당 기자회견에서 20년 전 판결문을 각색하여 정부 인사를 ‘중북세력’이라며 철 지난 매키시즘적 색깔론을 제기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음.

마. 국회의원 박정훈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며 국정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음. 또한,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퇴장조치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조치에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하였음. 이는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반한 것임.

바. 이와 같이 국회의원 박정훈은 「형법」 제311조(모욕),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제8호, 제9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